

 신안산대학교	교원 국외출장에 관한 규정	규정번호 2-3-15 제정일자 2001. 3. 1. 개정일자 2024.3.20. 책임부서/팀·계 교무처
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전임교원의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6.10.6.,2019.11.14 개정>

제2조(구분) 교원의 국외출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학술국외출장: 국제학술대회의 발표 또는 학술교류 참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
2. 공무국외출장: 대학의 학사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
3. 기타국외출장: 제1호,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인한 국외출장 <2019.11.14.개정>

제3조(허가절차) 국외출장을 하고자하는 교원은 여행게시 10일전에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1. 국외출장허가신청서 [별지 제 1호]
2. 보강계획서(학기 중에 한함)
3. 초청장 또는 관련 증빙서류

제4조(출장기간) ① 학술국외출장은 여행의 목적과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기당 통산 10일(토, 공휴일 제외) 이내로 한다. 다만, 총장이 인정 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② 공무국외출장은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기간으로 한다.

③ 기타국외출장은 방학기간에만 실시 할 수 있으며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당 30일을 초과 할 수 없다. 다만, 총장이 인정할 만 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5조(허가의제안) 총장은 학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해 교원의 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.

제6조(예외규정) 본 대학교의 교원연구년 및 연수규정과 국비지원에 의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<2009. 5.20,2016.10.6.개정>

제7조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]

국외여행허가 신청서

결 재	담당	팀장	처장	총장

성명		학과		직위	
여행국		도시명			
여행기간	20 . . .() ~ 20 . . .() (일간)				
여행목적 (구체적으로)	학술발표(), 연구활동(), 초청방문(), 공무수행(), 관광(), 기타()				
여행기간중 연락처		경비부담	자비(), 교비지원(), 국비(), 기타()		
수업관련	휴·보강계획서제출() 강의없음() 기타()				
<p>※첨부서류 1. 관련 증빙 서류(초청장, 일정표 등) 1부. (기타 국외여행 제외) 2. 휴·보강계획서 1부. (학기 중에 한함)</p> <p>위와 같이 국외여행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			
20 년 월 일					
성명 : (인)					
신안산대학교총장 귀하					
학과장					